

“국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는”  
2021 국민·공무원 제안  
활성화 계획

2021. 3.



행정안전부  
국민참여혁신과



# 목 차

I. 제도 개요 ..... 1

II. 중점 추진계획 ..... 2~6

① 국민과 함께 제안의 정책 반영 제고 ..... 2~3

② 제안 제도의 공개 확대로 정책의 신뢰성 강화 ..... 4~5

③ 국민 누구나 시·공간 구애없이 참여 가능한 제안문화 정착 ..... 6

III. 후속조치 및 연간 추진일정 ..... 7

## I. 제도 개요

### □ 운영목적

-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
- 정책수립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“국민이 주인되는 정부 운영” 구현

### □ 운영근거

- 국민제안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「국민제안규정」
- 공무원제안 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3조 및 「공무원제안규정」

### □ 운영체계

- (행안부) 제안제도·법령 총괄, 중앙우수제안 포상, 제안활성화 우수 기관과 유공자 선정·포상, 제안제도 운영 확인·점검 등
- (권익위) 국민신문고(온라인 국민제안 시스템) 운영 및 운영실태 점검  
\*국민제안규정 제5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16호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
- (중앙·지자체·교육청) 소관제안 심사 및 정책반영, 자체우수제안 선정

### □ 처리절차

- (운영) 제안접수 ⇒ 기관별 배정(권익위) ⇒ 기관별 제안담당(혁신행정담당관실)이 소관부서 배정·제안분류 ⇒ 제안분류 안건은 전문가 자문·심사위 심사 거쳐 채택 여부 결정 ⇒ 채택된 제안은 전문가 자문·숙의단계 거쳐 정책에 반영
- (포상) 기관별 자체우수제안 심사 선정(6월) ⇒ 행안부 중앙우수제안 접수(7월) ⇒ 중앙우수제안 심사·선정(8~10월) ⇒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(11월)

### 【 중점 개선방향 】

- 1 제안제도에 대한 속성·공론화 절차 확립 및 국민의 참여 폭 확대
- 2 제안자와 채택자의 협력제안 포상 등 제안 유인책 강화
- 3 제안 내용의 공개로 표절 방지 및 제안 운영의 신뢰성 제고
- 4 제안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확인 평가 체계 마련

## Ⅱ. 중점 추진계획

“제안은 더 알차게, 국민참여는 폭 넓게”

### 1 국민과 함께 제안의 정책 반영을 제고하겠습니다

#### □ 국민참여를 위한 제안 운영 개선

##### ○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숙성, 공론화 절차 확립

- (현행) 세밀한 숙성과정 불비로 인해 숙성 후 채택 가능한 제안이 불채택될 우려
- (개선) 채택 여부 결정 이전에 6개월 이내의 숙성, 공론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의 숙성·보완 기회 제공

[국민제안규정 제10조(채택제안의 결정) 신설]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안 내용의 보완·개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6개월 이내에 숙성·공론화를 거칠 수 있다. 이 경우 숙성·공론화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# ○ 제안자와 채택자의 「협력제안」 포상

- (현행) 제안에 대해 채택자가 채택·불채택·비제안 등으로 분류해 내용 보완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실시 또는 비실시 처리
- (개선) 제안을 채택자가 보완하여 채택을 실시할 경우 제안자와 채택자의 「협력제안」으로 포상

※ 보완한 채택자에 대한 협력제안자 자격여부 근거 마련

※ 공무원제안 시범 실시 \* 보완채택 공무원의 기여도 상한 설정(30% 이내)

[공무원제안규정 제12조(제안의 보완·개선) 신설] ② 제안 채택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할 때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의 내용을 보완해 협력제안을 채택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채택 공무원의 기여도 상한은 30% 이내로 정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[공무원제안규정 제16조(채택제안의 시상) 개정]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~ (중략) ~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 (제안의 내용을 보완한 협력제안자 포함)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.

#### ○ 실행 계획

▶ 숙의·공론화 가이드라인 마련 ( ~ 9월)

▶ 국민제안제도에 숙의·공론화 절차 신설 및 관련 규정 개정 ( ~12월)

## □ 제안의 재심사·부처 협의 강화

### ○ 제안심사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강화

- (현행) 제안의 '재심사' 기한이 1개월로서 지나치게 잦은 심사위원회 개최로 추진부서의 업무부담 가중 및 형식적 운영
- (개선) 재심사 기한을 3개월로 연장 추진하고 제안제도 운영 실적을 분기별(3개월 마다) 자체점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

[국민제안규정 제12조(재심사 요청)] **개정**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~ (중략) ~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되,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운영실적을 분기별 자체점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○ 다부처 제안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의 확행

- (현행) 국민신문고 등 실질적인 운영시스템 상 접수된 제안에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, 지연 및 소홀히 처리
- (개선) 부처별 제안 총괄담당자를 지정, 상시 공유를 통해 다부처 제안 발생시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'다부처 운영체계' 구축

※ 부처간 협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

[국민제안규정 제8조(제안의 심사)] **신설** ④ 제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제안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
### ○ 실행 계획

- ▶ 정부 부처, 지자체,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(3월 ~ )
- ▶ 국민제안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시행 ( ~12월)

□ 제안의 표절·도용 근절로 제안창구의 신뢰성 제고

○ 제안내용의 공개 근거 규정 신설

- (현행) 국민신문고의 개인정보보호 등 과도한 비공개 관리로 인해 비공개 비율이 높고 비공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

※ 비공개 비율\* : ('18년) 61.5%, ('19년) 68.2%, ('20년) 64.3% \*제안 접수기준

- (개선) 제안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제안 관련 규정 신설

※ 개인정보보호 항목 중 연락처, 주소 등 개인 민감정보는 현행대로 비공개 유지

[국민제안규정 제7조(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등)] **전면개정** ① 행정기관의 장은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한 이후 접수된 제안에 대해 그 제안 제목, 내용, 결정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공개대상 정보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, 이를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○ 우수제안 선정 前 사전 공시 의무화

- (현행) 우수제안 포상 시 중앙부처, 지자체 등 각 기관별로 공유없이 추진됨에 따라 중복, 표절, 도용 등 부작용 발생

- (개선) 우수제안 확정 이전에 일정기간(14일) 공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표절 등 방지 확인 절차 추가

[국민제안규정 제7조(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등)] **신설** ③ 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안 확정 이전에 그 대상자에 대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플랫폼을 통해 14일 이상 제안 제목 및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○ **실행 계획**

- ▶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(3월~ )
- ▶ 국민제안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시행 ( ~12월)

## ○ 포상의 사후 취소 근거 마련

- 행정기관의 주기적 점검 강화하고, 표절·도용이 사후 드러날 경우 포상·시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
[국민제안규정 제18조(채택제안의 시상)] **신설**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이 채택되어 포상·시상을 실시하였더라도 표절·도용이 사후 드러날 경우 그 포상·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○ 제안자 등 참여 국민의 윤리준수 유도

- 제안서 서식 개정(제안규정 시행규칙) 등을 통해 제안자가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

※ 「국민참여활성화법」 제정 시 참여 국민의 윤리 규정 신설

\* (중앙부처·지자체) 공모전 등 우수제안 선정 시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표절방지 공개 검증 실시 등 자체점검 강화

## □ 모니터링 및 확인·평가 강화

### ○ 중앙부처·지자체 등 기관별 제안실적 공개

- (현행) 기관별 제안 실적이 매년 저조하고 무관심해 지는 추세
- (개선) 기관별 주요 제안 실적을 대내·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참여와 관심 제고 유도

※ '21년 실적은 '22년초에 행정기관 내부 공개, '22년 실적 부터는 대국민 공개

### ○ 각 기관의 제안 운영 총괄부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여 해당 기관의 채택제안 심사·집행상황을 점검·독려

### ○ 제안실적 결과를 토대로 기관 평가 강화

- (현행) 매년초 전년도 제안실적을 기관별 취합해 주로 현황자료로 활용
  - ※ 매년 우수기관 선정, 시상하고 있으나 파급 효과성 한계
- (개선) 매년말에 당해 성과를 취합해 당해연도 기관평가에 반영 확대
  - ※ 「지자체 혁신평가」, 「민원서비스 종합평가」에 제안실적 적극 반영

## “제안이 일상이 되는 사회”

### 3 국민 누구나 사·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가능한 제안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

#### □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온·오프라인 ‘제안 교육의 장’ 마련

- 국민과 함께 하는 제안문화 확산의 무대 운영
  - 지자체와 연계해 주민대상 제안 교육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지속 홍보
  - 민관 공동으로 젊은 층 중심으로 제안 문화를 확산하는 SNS 등 홍보 추진
- 제안 교육을 위한 강사진(POOL) 구성 및 교재 제작·활용
  - 국민디자인단 및 디자인진흥원, 제안협회 등과 협의해 제안 교육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고 개정된 제안규정 등을 담은 교재 제작·활용

#### □ 맞춤형 제안제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제안 역량 강화

- 교육 수요자별 눈높이에 맞는 사례 위주의 교육 실시
  - 중앙 우수제안 수상자(국민), 제안정책명장(공무원)을 활용
  - 부내 국민참여 우수사업 또는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과 연계 실시
-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미래세대(청소년) 제안제도 체험 및 교육\*
  - \* 교육부 운영 진로체험지원전산망(꿈길) 활용, 초·중·고생 대상 온·오프라인 제안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
- 국민·공무원의 인지도·이해도 제고 및 사회 전반의 제안 문화 홍보
  -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안 정책화 대표사례 발굴 및 브랜드화
    - ※ 리플릿 제작, 시리즈 방식 홍보(카드뉴스·동영상 등) 등 국민에게 흥미롭고 친근하게 확산
  - 제안제도와 국민참여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제안의 투명성 강화
    - ※ 광화문1번가(행안부)에서 제안의 표절 등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(권익위)와 연계

#### ○ 실행 계획

- ▶ 제안강사진(POOL) 구성 및 교재 제작 (4월)
- ▶ 자치분권실과 협의해 지역기반 주민대상 교육·홍보 개시 (5월)
- ▶ 제안 사례 위주의 교육 실시 (6월)
- ▶ 제안 관련 시리즈형 온라인 이벤트 계획 구상 및 홍보 (7월)

### Ⅲ. 후속조치 및 연간 추진일정

#### 1 기관별 제안 활성화 계획 수립·시행

- 각 기관은 「2021 국민·공무원 제안 활성화 계획」을 반영해 기관별 자체 제안 활성화 계획 수립

#### 2 연간 추진일정

시 기	계획명	추진사항	
		취지	실행 사항
21년 3월	·'21년 국민·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	-올해 범정부적 제안활성화 계획 및 공동확산	· 중앙·지자체 등 300여 기관 대상 공지
	·제안 활성화 계획 설명회	-제안 계획 수립에 따른 신규 추진사항 안내·설명	· 중앙부처, 시도, 시군구 제안 담당자 대상으로 영상회의 개최
4월	·'21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계획 통보	-기관별 제안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	· 올해 우수제안 실시와 관련한 세부내용 공식 통보
5월	·국민 대상 제안분야 교육 확산 기반 마련	-지역단위 제안교육 및 대 국민 정책제안 교육·홍보	· 자치분권실과 지자체 교육 협의·추진
6월	·기관별 정책반영 우수 성과자 발굴 및 홍보	-제안의 정책반영을 공무원의 주요 업무과제로 정착	· 정책화성과 노력도 감안해 선발 · 언론·온라인 등 활용 홍보 추진
	·기관별 자체우수제안 선정 및 중앙우수제안 추천	-범정부적 제안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	· 6월말까지 기관별 추천취합 · 중앙제안심사위 심사 개시
7월	·대국민 제안관련 시리즈 이벤트 개시	-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안제도를 이해하도록 유도	· 연말까지 단계적 추진계획 마련 · 계속성 있도록 홍보 추진
8월	·제안제도 컨설팅 개시	-정부기관 전반에 걸친 제안 성과 창출 및 수준 향상	· 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 · 자문단과 합동으로 방문컨설팅 실시
9월	·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계획 통보	-제안활성화 유공기관 포상을 통한 기관별 적극참여 유도	· 제안실시 공무원에 대한 선발계획 등 강조
11월	·'21 중앙우수제안 및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경진대회	-제안제도 실행 우수자 포상 및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	· 국민참여 온·오프라인 심사 실시 · 포상자 대상 인사특전 등 강조
12월	·정부업무평가 참여분야 실적 취합 및 평가 시행	-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제안 제도의 자발적 노력 유도	· 12월 2주 내 실적취합 완료
	·국민·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 및 양식 개선	-국민·공무원제안을 쉽게하도록 해 제안제도의 활성화 도모	· 권익위 등과 개선안 협의·추진 · 표절방지 서약서 등 비자(온라인병행)
22년 1월	·'21 행정기관 제안실적 공개	-기관별 제안 주요실적을 행정 내부 공개	· 국민·공무원 제안의 접수, 채택, 실시 및 위원회 운영실적 등 공개

□ **포상근거** : 국민제안규정 제16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5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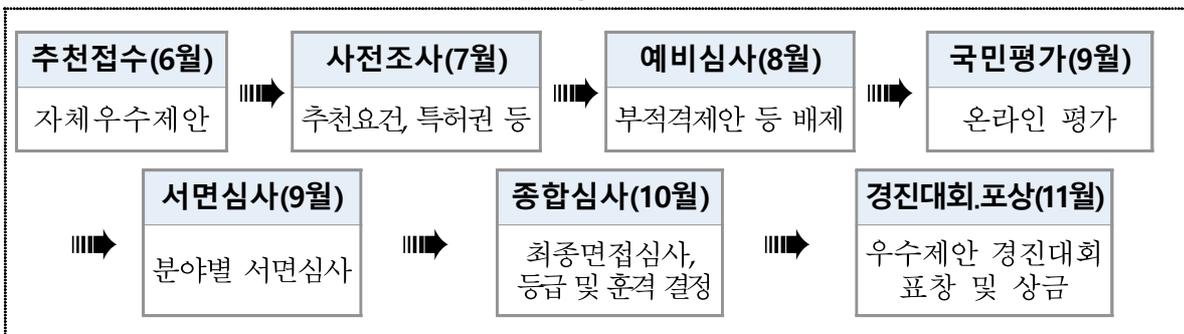
□ **자체우수제안 추천**

- (추천기관)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군·구, 시·도교육청
  - 소속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은 본부(본청)에서 통합 심사해 추천
  - 시·군·구는 시도를 경유해 추천
- (추천기한) '21. 6. 30.(화)까지 행정안전부에 추천
  - ※ '21. 5월 중 행정기관별 자체우수제안 추천 요청서 및 서식 발송
- (추천대상) 각 기관이 '20. 6월부터 '21. 5월까지 1년 동안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한 국민·공무원제안
  - 종전 국민신문고 중심의 접수 제안에서 기관별 자체제안시스템 및 공론장 등을 통한 접수 제안으로 대상을 확대
  - 중앙우수제안 추천 후보작은 자체기관의 사전 공시\*(14일간)를 거쳐야 함
    - \* '21년 12월 제안규정 개정안 시행예정으로, '21년은 개정 이전부터 적용 실시
    - ※ 추천기관은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 및 정부혁신 참여분야 평가에 반영

□ **심사 및 포상**

- (심사기간) 2021. 8월 ~ 10월(약 3개월간)
- (심사기준) 창의성, 효율성, 적용범위, 계속성, 노력도를 종합 평가
  - ※ 100점 만점으로 채점 (국민평가 비중 30%)
- (심사일정) 접수(6월)→심사(7~9월)→종합심사(10월말)→경진대회·포상(11월)

**< 심 사 일 정 >**



- (포상) 국민·공무원제안규정 및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창안 등급별 표창 및 상금 지급

□ **기본방향**

- (우수기관) 기관별 제안 채택 및 정책반영도, 자체적 제안문화 확산 노력 등을 종합해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
- (유공자) 제안의 정책반영에 기여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기관별 제안업무 담당공무원 등 노력과 성과를 감안해 선정 및 포상

□ **포상근거** : 국민제안규정 제20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21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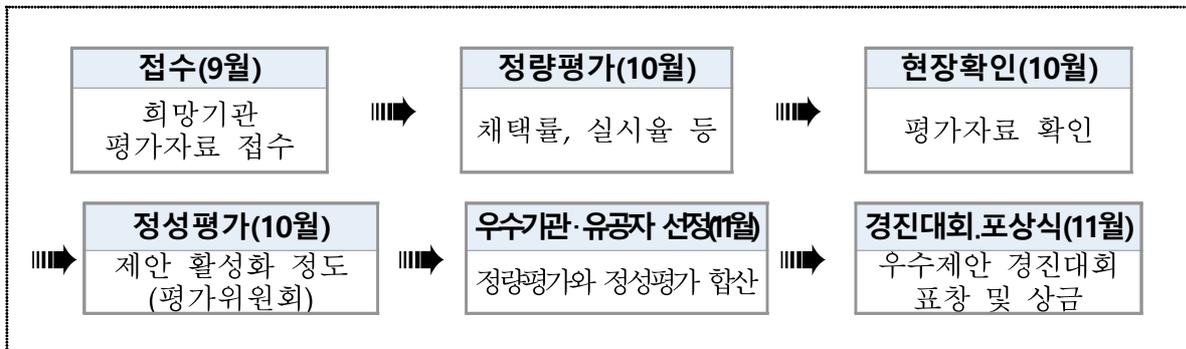
□ **포상 희망기관 신청**

- (신청기관)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(시도, 시·군·구), 시도 교육청
  - 시·군·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
  - 시도 교육청은 시·군·구 교육지원청의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
- (신청기한) '21. 9월 중 행정안전부에 신청
  - ※ '21년 9월 초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(유공자) 추진계획 송부 예정

□ **제안 활성화 우수기관·유공자 평가 및 포상**

- (대상) '20. 9월~'21. 8월(1년)까지 기관별 제안운영 및 정책반영 실적
- (일정) 접수(9월) → 평가(10~11월) → 종합심사(11월) → 경진대회 · 포상(11~12월)

**< 평가 일정 >**



- (평가지표) 접수율, 채택률, 실시율, 제안활성화 우수사례 등